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7-학인-00030 교사에 의한 학생 따돌림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
피 해 자 ○○○(○○○○초등학교 ○학년 ○반 학생)
피 신 청 인 1. ○○○(前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2. ○○○(○○○○초등학교 ○학년 부장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 1. 2.는 특정 학부모(신청인)와 갈등을 타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타 학부모들이 해당 학생(피해자)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는 해당 교사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특별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 학교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타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초등학교장에게

가. 교사의 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 학생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구성원들의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2회 이상 실시[1]하고,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 및 해당 반 학생들의 피해 및 관계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특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신청인의 주장 중, 신청요지 1)항의 “따돌림 조장”, “전학 강요”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 유

1)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2017. 7. 21.(금)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함.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7. 7. 11.(화)

나. 신 청 인 : ○○○(피해자의 母)

다. 피 해 자 : ○○○(○○○○초등학교 ○학년 ○반 학생)

라. 피신청인 : 1. ○○○(前,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2. ○○○(○○○○초등학교 ○학년부장 교사)

마. 신청요지

1) 피신청인 1.은 피해자가 평소 반학생들과 잦은 마찰과 다툼이 있다는 사유로 따돌림을 조장하였으며, 학교폭력을 이유로 강제전학을 가도록 종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학교에서 임시 분리조치(2017. 7. 6. 임시 담임교체)를 취했다.

2) 이에 피신청인 1., 2.는 2017. 7. 5.(수)경 반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여 '신청인이 담임교체를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이야기하여, 2017. 7. 6.(목)경 반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가 고소해서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데 너는 왜 학교에 나오냐"라고 말을 하여 학생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

2. 관련규정

[붙임 4] 와 같다.

3.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위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 2.의 주장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신청인들과 신청인의 주장, 관련 서류(해당 교사 소명서, 신청인 제출 기록 등)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 5. 17.(수) 16:00경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아이가 반 아이들과 잦은 마찰과 다툼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반 아이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건네서도 주고받아서도 안되며, 아는 척도, 옆에 가면 안된다고 그렇게 지내자고 제안을 했고 약속을 했다"라고 전화 통화로 이야기하였는데, 신청인은 "제발 왕따라고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철회해 달라"고 하여, 피신청인 1.이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철회하였다.

2) 2017. 6. 14. (수) 10:50경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피해자를 좀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여러 번 수업에 방해가 되어 이야

기를 했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이가 절대 안하고, 희망이 없다", "하루 동안 ○○이를 데리고 수업을 할 용기가 안 난다고 그래서 보내는 거다"고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 및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실내화를 흩어버리는 등 지도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학교에 오지 않았고, 피신청인 1.이 피해자를 달래서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마쳤다.

3) 2017. 6. 21.(수) 18:30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권하여 청소년 소아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이야기하자, 피신청인 1.은 "의사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보게 했는데 그림을 통해서 본 결과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다.

4) 2017. 6. 29.(목) 피해자는 같은 반 친구가 기지개를 펴다가 피해자의 몸에 닿아서 미안하다고 하자 웃으며 괜찮다고 했고, 이후 국어시간에 같은 친구가 발표를 2~3회 하느라 일어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책상이 밀렸고, 피해자는 세 번씩이나 책상을 민다면서 실내화 주머니로 친구를 가격한 사실이 있다. 같은 날 18:15경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전화통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명하면서, "출석정지, 등교정지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피신청인 1.은 학교장과 이야기한 후, 같은 날 19:55경 다시 신청인과 통화하여 등교정지는 본인이 잘못 알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사과하고, 월요일(2017. 7. 3.)부터 학교수업에 신청인이 참관하여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관찰하면서 지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5) 2017. 7. 3.(월) 오전 신청인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의 수업을 참관하였고, 10:00경 학교장과 면담을 하고, 11:00경 다시 교실에 와서 피신청

인 1.과 면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하여, 신청인이 중재를 하고, 학교 방문을 마쳤다.

6) 2017. 7. 5.(수)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사과(위 인정사실 4)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전학을 강요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담임교체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은 임시 담임교체(2017. 7. 6.)할 예정임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1.에게 통보하였다.

7) 2017. 7. 5.(수) 16:30 이후, 피신청인 1.은 ○학년 ○반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여 "신청인이 피해학생의 지도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잘못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하여, 소명자료가 필요하니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들과는 어떤지, 담임교사가 지도하면서 부당하거나 잘못한 부분도 있는지에 대해 물어봐서 아이들이 말하는 바를 가감 없이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신청인 2.는 "학생 수가 많으니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학년 ○반 학부모(30명) 중 절반(15명)에게 피신청인 1.과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다.

8) 2017. 7. 6.(목)경 ○학년 ○반 교실에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사랑해요."라고 칠판에 적혀 있었고, 피해자가 등교를 하자, 학생 중 한명은 "너희 엄마가 고소해서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데 너는 왜 학교에 나오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

9) 2017. 7. 7.(금) 피신청인 1.은 임시 담임교체가 해제되어 ○학년 ○반 담임을 하였고, 같은 달 12.(수) 학생인권교육센터 1차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달 13.(목)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되어 현재까지 담임을

맡지 않고 있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따돌림과 같은 폭력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 1), 2), 3), 4), 5)항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생활 교

육에 있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1.의 갈등이 상당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항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 1)항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의 따돌림을 조장하는 형태의 지도 방식은 부적절하므로 인권침해행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 2), 3)항은 학생을 지도하는데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발생한 사항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 4), 5)항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신청인) 설명하는(피신청인 1.)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대상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1.의 전화통화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전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피신청인 1.은 "전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적으로 전학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학교장은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상황에서, 갈등의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하고 때로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위 인정사실 6)항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1.이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상당한 갈등 상황에 대해 학교장은 일시적으로 신청인(피해자)과 피신청인 1.을 서로 분리하였다.

인정사실 6)항에 대해 피신청인 1., 2.는 인정사실 7)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정사실 8)항과 같은 행위로 이어졌다.

인정사실 7)항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관련한 개인정보(피해자의 학부모인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 포함)를 같은 반 학부모들에게 유포한 것이며,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모멸감, 수치심, 두려움 등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어 다른 학생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사실 8)항에서 보여지듯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 인정사실 9)항과 같은 학교의 분리 보호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가 특정 학부모와의 갈등을 타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타 학부모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학생에 대한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료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며, 이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서 전화를 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교사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8.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오 동 선 (인)

[붙임 4]

관련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